

196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인민

이성봉(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정치학)

1. 들어가는 말

1960년대를 맞는 북한 경제는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차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국토는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1946년에 비해 1960년의 공업 총생산량은 21배, 농업 생산량은 2.2배, 그리고 국민소득은 6.8배로 증가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였다.¹⁾ 또한 전후에 논란이 거듭되었던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됨으로써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1961년에 치러진 제4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 『조선중앙년감 1963』(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3), 335~337쪽.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얻은 북한 지도부는 ‘자립경제’라는 야심에 찬 기치를 내걸고, 1961년부터 시작되는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생산은 3.2배, 농업생산은 2.4배, 그리고 국민소득은 2.7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투자재원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의 형편에서 이는 다시 한 번 인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1950년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노동력 상황은 한계점에 달하고 있었다. 1950년대의 광범위한 노동력 발굴로 북한 땅에는 더 이상 잠재적 노동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각종 노력동원 운동의 효과도 한계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이 끝나면 생산성이 오히려 이전보다 저하되는 ‘생산의 과동성’을 일으키고 있었다. 또한 전후부터 끊임없이 강화된 노동규율도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기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제1차 7개년 계획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력 관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당과 대중조직을 통한 광범위한 조직화와 사상교양 사업이 전개되었고,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방법’이 생산현장에 도입되었으며,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통한 사회주의 노력경쟁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은 예정보다 3년이 늦기는 했지만,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제1차 7개년 계획의 완수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미래를 위해 힘겨운 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인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 북한 사회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의 생산현장에서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1960년대 북한 인민들의 노동자, 농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과 본질을 이해

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북한의 생산현장은 단순히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민을 새롭게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하고 조직화하는 공간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60년대에 들어와 변화된 북한의 생산관리체계의 기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인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당과 국가, 혹은 ‘조직’이라는 존재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둘째,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생산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규율, 노동조건, 노동조직화와 노동교양, 그리고 임금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민들의 노동자, 농민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과 의식의 변화를 살펴 볼 것이다.

셋째, 국가경제와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검토함으로써 196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이 인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2. 1960년대 북한의 생산관리체계의 특징

1) 당의 역할 강화와 균중노선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의 생산관리체계는 스탈린 시기에 확립된 소련의 모델을 따라 국가의 행정조직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 즉, 공업 분야의 경우 중앙 수준에서는 내각의 경제관련 성·국이 산하의 공장·기업소를 직접 지도하고, 공장·기업소 내에서는 성·국이 임명하는 지배인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농업 분야의 경우도 내각의 농업성 - 도인민위원회 - 군인민위원회 - 협동조합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가 경제관리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와 관련된 당의 역할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지도’를 수행할 뿐, 경제관리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업 분야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농업 분야에서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생산관리에 대한 당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196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김일성은 도당위원회에서 관할 지역 내 공장, 기업소들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인 성, 관리국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자재보장, 기술지도, 노동행정 및 후방공급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²⁾ 이러한 김일성의 구상은 1961년 12월 15일 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새로운 관리체제의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장·기업소의 운영에 있어서 당이 생산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그 동안의 공장관리체제에서 가장 큰 결함은 “생산에 대한 행정·기술적 지도체계만 있고 당적·정치적 지도체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생산활동을 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임명하는 지배인이 전권을 갖고 운영하던 공장관리가 공장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로 대체되었다. 즉, 공장 당위원회가 “공장 앞에 맡겨진 생산계획 수행

2) 김일성,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40쪽.

과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이것을 직접 지도”³⁾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공장 당위원회의 위상도 높아지게 된다. 과거 군당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던 특급·1급·2급에 속하는 공장·기업소 당위원회가 군당위원회 수준으로 격상되어, 도당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되었으며, 그 조직과 인력도 크게 보충되었다.

이러한 생산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는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되었다. 1960년 2월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하면서 청산리 방법, 즉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⁴⁾ 군중노선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이 경제관리에 중심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아가 1962년 2월 23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군당위원회는 군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을 지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의 역할 변화가 제도적으로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당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농업 분야에 대한 관리체계가 기존의 행정조직을 통한 지도에서 ‘경영위원회’를 통한 지도로 개편되고, 이 경영위원회를 당이 직접 지도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농업관리체계가 등장하면서 군당위원회의 주요 임무도 농촌경영과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도와 통제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위해 1급 경영위원회가 조직된 군에는 군당의 기구를 확대하고 특히 유능한 간부를 배치하였으며, 군당위원장에는 도당 부위원장급을 배치하였다. 1962년 7월에 도인민위원회에서 농촌경영 부문이 분리되어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생산관리에 대한 당적 지도는 중앙과 도의 차원에

3) 김일성, “새 환경에 맞게 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 데 대하여”(1961년 12월 16일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124쪽.

4)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1123쪽.

서도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도 당 우위의 원칙이 관철되어 도당위원회의 지도, 감독, 조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기능적으로 과거 도인민위원회는 농촌경리위원회, 경제위원회, 인민위원회의 3부분으로 분할되었지만, 도당위원장이 조정과 통제 권한을 행사하였다. 도내 기관장의 서열 역시 도당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 도인민위원장, 도경제위원장의 순으로 되었다.⁵⁾

농업 분야에 대한 당의 위상과 역할은 북한이 농촌관리의 기본단위를 군으로 설정함으로써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62년 8월 김일성은 산간지대의 모델로 설정된 평안북도 창성군 일대를 현지도하고, 그 결과를 8월 7~8일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연석회의’를 통하여 밝혔다.⁶⁾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군(郡)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설정하고 “군 사업을 강화하고 군 소재지를 잘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군 사업의 핵심으로 바로 군당위원회를 들었다. 그는 군당위원회를 “농촌경리를 비롯하여 군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 지도하며 집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군당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와 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잘 지도하고 모든 부문을 잘 움직여 나가야 하며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고 그들이 다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농업 부문에서도 당적 지도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5)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の成立 1945~61』(東京:東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562쪽.

6) 김일성,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1962년 8월 8일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 연석회의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05~349쪽.

2) 근로단체의 당조직화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각종 근로단체 역시 당의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개편되었다. 1964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회의의 결론을 통해 직업동맹이 ‘마치 제2의 노동성과 같이 행정사업’을 함으로써 본연의 사업인 노동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등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본주의적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예로 직맹 조직과 지배인이 생산계약을 맺는 것을 지적하였다.⁷⁾ 자본가들이 다 없어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직맹과 ‘행정’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에, 직맹이 ‘행정’과 계약을 맺는 것은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처럼 직업동맹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직업동맹의 과업을 노동계급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생산증대, 노동보호 사업,⁸⁾ 노동자들에 대한 기술교양, 노동자들의 문화수준 향상 등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동맹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당적 지도가 관철되어야 하며, ‘직맹은 당에 끝없이 충실한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김일성의 이러한 언급은 직맹의 독자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기업소와 공장에서 관리자의 운영 방식을 감독하고 생산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그나마 남아 있던 직맹의 자율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농민단체에 대한 개편방안도 제시되었다. 농민동맹은 해방 직후 토지개혁 과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

7) 김일성, “근로단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131쪽.

8) 김일성은 이러한 노동보호사업이 직맹이 ‘행정’에 대하여 노동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보호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노동보호 물자에 대해서도 ‘행정’에 대하여 요구하지 말고 그것을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러한 ‘반봉건’ 과제가 달성되자, 농민동맹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특히 농업협동화가 완성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농민동맹은 상부조직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당조직이나 청년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농민들은 어떠한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다.⁹⁾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김일성은 회의의 결론에서 농민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규정하고, 따라서 농민동맹이라는 이름도 ‘농업근로자동맹’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직원의 구성도 농민만이 아니라 국영 농목장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관, 기업소들의 노동자, 사무원들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농업근로자동맹의 임무를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하여 농민대중 속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적극 조직, 동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농업근로자동맹은 “모든 농민대중을 포괄하는 근로단체로서, 농촌사업을 보장하는 우리 당의 외곽단체로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내용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5년 3월에 농근맹 창립대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이 대회에서 농근맹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당과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근로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라는 규약이 채택되었다.¹¹⁾

1960년 중반에 단행된 이러한 근로단체에 대한 일련의 개편 작업으로 북한의 대중조직은 완전히 자율성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중조직 개편 작업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단적으로 나

9)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563쪽.

10) 김일성, “근로단체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26~131쪽.

11) 대륙연구소 편, 『북한 법령집』, 제2권(서울 : 대륙연구소, 1990), 387쪽.

타나고 있다.

“우리 당은 직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임무와 직능을 명백히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사회단체들의 사업에 일부 남아 있던 낡은 틀을 종국적으로 마수고 당정책 관철에서 능동성과 창발성을 더 높이 발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의 인전대로서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당은 또한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일군들이 당의 령도에 항상 충실하며 행정식 사업방법을 버리고 당적 방법으로 사업하도록 꾸준히 지도하였다. 당의 꾸준한 교양과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령도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었으며 항상 당의 지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당조직에 적극 의거하여 일하고 모든 사업을 당적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었다.”¹²⁾

1960년대 초반에 단행된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이제 근로단체는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당의 하부조직으로서 당정책을 실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개편되고 말았다.

3) 사회주의 노력경쟁의 일상화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서는 각종 증산운동이 벌어졌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노력동원 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는 집단경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1959년 3월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60년대 북한의 노력경쟁 운동의 기본적인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단순히 증산을 목표로 했던 이전의 노력경쟁 운동과는 달리 인민들을 집단화하고 사상적으로 개조

12) 김영걸,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의 강화”, 『근로자』, 제20호(1965), 41쪽.

시키는 핵심적인 구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한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이전의 노력경쟁 운동에 비해 다음과 같은 질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쟁 운동은 노동자의 적극성과 창발성에 기초하여 경제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 절약투쟁 강화, 원가의 저하,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노동자의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며, 노동자들의 사상과 도덕, 노동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는 것이다.¹³⁾ 따라서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작업반은 미리 작업반원들에게 사상준비를 시켜야 하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결의문(의무)’을 통해 “전체 작업반 성원들이 공산주의 사상, 높은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사업을 혁명전통 학습, 당정책 학습과 결부하여 목적 지향성 있게 함으로써 모두가 당적·계급적 입장에 선 확고한 공산주의 혁명 투사로 되기 위한 결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¹⁴⁾

둘째, 이전의 사회주의 경쟁은 개별적인 노동자들의 혁신운동이었으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단위인 작업반 단위의 혁신운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개인주의가 철저히 배격되고, 집단주의에 의한 상호경쟁과 상호 감시가 주요한 내용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셋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은 주로 공업 분야에 국한되었지만,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의 노동자, 농민, 인테

13)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기수독본』(평양 : 직업동맹출판사, 1963), 34~35쪽.

14) 위의 책, 340쪽.

리를 포괄하는 전 사회적인 운동이라는 것이다.

넷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김일성은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행한 보고 속에서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 것을 쓸어 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 제13조에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천리마운동의 지속성을 명시해 놓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서 노력경쟁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었으며, 이 속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노력경쟁과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되기를 강요받았던 것이다.

3. 생산현장에서의 노동관리와 인민

1) 노동력 관리와 노동규율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노동력 관리와 노동규율에 대한 규정은 1946년에 만들어진 「노동법령」을 토대로 하고 있었지만, 한국전쟁 기간에 강화된 내용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와 직업동맹과 농근맹이 당의

하부 조직화함으로써 노동규율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1960년대 북한 사회에 휘몰아친 천리마작업반운동 등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 일상화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 노동규율은 규정 이상으로 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모든 노동력은 중앙계획에 따라 직접 배치되는 체계를 취하였다. 즉, 국가계획위원회가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수립한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노동 계획에 따라 노동성이 노동자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직접 노동자들을 직장에 배치하는 것이었다.¹⁵⁾ 일단 취업한 이후에는 노동자들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반드시 직장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전직(轉職)이 가능하였다. 이를 어긴 노동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를 방치한 기관 및 기업소의 책임자도 재판에 회부되어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¹⁶⁾

또한 노동력 관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기업소마다 ‘노력대장(臺帳)’과 ‘노동수첩’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노력대장에는 기업소의 생산능력, 노동력 구성, 노동정량사업 등을, 노동수첩에는 채용 일자, 직장명, 직위, 임금등급, 상벌 내역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노동수첩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반드시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직장 책임자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동수첩에 기재된 전직, 퇴직 등 개인 경력과 일체 부정 내용 유무를 엄격히 검토하고, 다시

15) 해방 이후 1954년까지는 기업소 책임자와 개별 노동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노동력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심각한 노동력 공급 부족이 발생하였으며, 노동자의 전직과 노동규율이 약화됨으로써 1954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배치하는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16) “기업소 및 기관 노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관하여”(1953. 8. 31. 상임위원회 정령), 대륙연구소 편, 『북한법령집』, 제4권, 288쪽.

채용 일자, 직장명, 직위, 임금 등급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신규 노동자에 대해서는 리(里)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증명하는 무직증명서 또는 전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¹⁷⁾

노동자에 대한 규율도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근을 하거나, 점심시간 위반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주의’, ‘경고’, ‘엄중경고’, ‘감금(減金) 또는 강직(降職)’, ‘철직(撤職)’ 등이 가해지며, 노동시간 내에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여 30분 이상의 노동시간을 손실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정하고 국가식량배급을 감하였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30분 이하의 노동시간을 손실케 한 노동규율 위반이 한 달에 3회 또는 2개월 연속하여 4회일 경우에는 결근 1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법정 노동시간인 480분은 완전히 작업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주어진 과업을 초과 달성하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격품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또한 노동자, 사무원이 작업 도중에 불합격품을 만든 경우에는 ‘책벌(責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법규에 의하여 물질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¹⁸⁾

2) 노동 조직화와 노동교양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노동자들에 대한 규율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업반’이나 ‘분조(分組)’를 단

17) “국가기관, 사회단체, 협동기관, 기타 일반기업소 및 사무기관의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내부질서 표준규정”(1950. 1. 31. 내각 결정 제27호), 대륙연구소 편, 『북한법령집』 제4권, 283쪽.

18) 위의 글, 286쪽.

위로 노동력을 조직화하여 통제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는 노동규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노동시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었지만, 노동과정에서의 적극성과 생산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집단을 통한 노동조직화와 노동교양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집단적 차원의 생산실적을 개별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시킴으로써 조직 내부의 상호경쟁과 감시를 일상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1961년 3월 전원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내부 채산제’와 ‘작업반 상금제’를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¹⁹⁾ 이에 따라 공업 분야에서 개인의 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기술수준이나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강도 등에 의하여 일차적인 평가가 되지만, 동시에 작업반 단위의 실적도 개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경쟁과 감시가 벌어지도록 한 것이다.²⁰⁾

농업 분야에서는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도급제’를 통하여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었다. 작업반 우대제는 1960년 2월 김일성의 청산리 현지도도를 계기로 협동농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작업반별로 부과된 생산계획의 90%까지는 개인별로 수행한 노동일수에 따라 분배하고, 90%를 초과하여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설정하여 작업반원들에게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다.²¹⁾ 작업반 우대제는 1960년대 중반에 ‘분조도급제(分組都給制)’로 발전하게 된다. 1965년 5월 11일 김일성은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도도하면서 분조도급제를 제안

19)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지식』(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161~162쪽.

20) 이러한 경쟁의 한 예로 ‘림병규 천리마작업반’에서는 “생산 및 절약 과제의 수행, 노동강도, 노동규율의 준수, 모범적인 활동 등의 항목에 대해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개인별 평가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일일이 점수화하였다” 한다. 작업동맹출판사, 『천리마기수독본』, 128쪽.

21) 고승효, 『북한 사회주의 발전연구』(서울 : 청사, 1988), 233쪽.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해부터 모든 협동농장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²²⁾ 이 제도는 “토지·가축·농기구와 노동력을 고정시켜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수확고 계획과 노동계획을 부여받고, 이 계획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분조원에게 노동일을 재평가하고 이 노동일수에 상응하는 분배를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반보다도 규모가 작은 단위를 기초로 하여 노동을 조직화하고 분배를 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집단적 분배의 단위를 세분화한 것은 기존의 작업단 단위에서는 집단적 실적이 개인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작업반원들이 작업반의 계획 과제를 초과 수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노동일을 늘리는 것에 더욱 관심을 쏟는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²³⁾ 북한은 기존의 작업반 단위에서 보다 세밀한 단위인 분조로 농민들을 조직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집단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분조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분조는 훌륭한 생산조직 형태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키우는 가장 합리적인 집단생활의 세포이다. 농민들의 일상생활은 분조를 통해서 조직 진행된다. 분조 생활과정에 농장원들은 서로 성격도 더 잘 알게 되고 이해가 깊어지게 되어 잘못을 서로 깨우쳐 주면서 옳은 길로 이끌어 준다. 그러므로 분조의 역할을 높이고 분조 생활을 실속 있게 조직하는 것은 집단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²⁴⁾

둘째는, 작업반 조직을 통하여 엄격한 규율과 조직화가 진행된다는

22)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전사』, 제3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76쪽.

23) 고뢰정, 『북한 경제입문』(서울: 청년사, 1988), 70~79쪽.

24) 주학필, “농민혁명화와 집단주의 교양”, 『근로자』, 제7호(1969), 43쪽.

점이다. 노동 규율과 조직화는 작업반 단위로 정해진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조직화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천리마 대안전기 공장에서는 작업반 매일 총화, 순별 및 월간 직장 내부 재산제 실행총화, 주 1차씩 조직되는 작업반장 연합회의, 직장 담당 성원들의 매일 총화회의, 직장 및 각 부서들에서의 주간 사업 총화, 매주 1차씩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공장참모회의 및 간부협의회의, 월별 분기별 증산경쟁 총화회의 등의 총화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다고 한다.²⁵⁾

또 다른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경험담은 작업반 내에서 벌어지는 규율과 조직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당 분조 회의 후 우선 신입 로동자들을 작업반 생활에 안착시키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우리는 신입 로동자들을 교양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집중적 교양 기간을 설정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수상동지의 교시들과 우리 작업반이 공산주의적 붉은 집단으로 꾸러지기까지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집체 담화와 개별 담화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신입공 1~2명의 천리마작업반원들을 배치하고 신입공들의 공산주의적 결의와 실천이 일치되도록 방조하였으며, 분초급 단체 위원회에서 매일, 매주, 분공 맡은 동무들의 사업정형을 장악하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 우리는 8개월간을 하루와 같이 점심 시간마다 15분씩 실무 전습을 조직 진행하였다.”²⁶⁾

이러한 작업반 단위의 규율과 조직화는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작업반은 계획작성, 작업수행, 작업평가, 보수분배에 있어서 기본단위가 되도록 하였으며, 일단 소속 작업반이 결정되면 구성원은 고착되도록

25) 김원석·박원일, 『인민경제 계획화에서 군중로선의 관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61쪽.

26) 박성수·안상진, “우리 작업반에서의 공산주의적 지원 운동”, 『천리마작업반』, 제4권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3), 3~4쪽.

하였다. 농민들은 개개인마다 경작지, 경작방법, 작물종류, 작업일자, 사용기구가 정해져 있으며,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작업을 소홀히 하면 작업반 내에서 또 조합에서 즉각적으로 제지 혹은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작업반을 통한 규율의 강화 역시 1960년대 중반 ‘분조도급제’가 도입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작업반을 하나의 사상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였다. 작업반은 생산단위이면서 동시에 북한 지도부의 정책적 의지를 대중적 차원에서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단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공식 규정에서 의하면 작업반이란 “일정한 생산과제에 따라 공동작업이 수행되고 직접 기술혁신이 실현되는 생산의 말단 단위일 뿐 아니라 기업 관리에 대중이 직접 참가하는 기본단위이며 대중적 사상교양사업의 거점”²⁷⁾을 의미한다. 우선, 대중적 교양단위라는 특징은 작업반 평가에서 생산계획 완수 정도와 더불어 당정책 이해 정도나 혁명전통 학습 정도가 주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 천리마작업반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생산실적도 중요하지만 당의 정책이나 혁명전통을 학습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 공산주의 교양, 특히 당정책과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은 생산과정을 통해 실시되었다. 즉 혁명전통을 학습하면서 ‘그들처럼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들을 대중화시킨 회상기 학습이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 회상기 내용을 일상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붉은 수첩운동’이 제기되었고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한 투사들과의 상봉모임도 추진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의 회상기 학습은 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일 필요

27) 전정희,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제9호(1964), 31쪽.

가 있으며, 비타협적 투쟁정신과 관련된 ‘원쑤는 간악하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필승의 신념’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 ‘집단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였다. 이른바 ‘공산주의 미풍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과정에서 지도집단인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대중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집단주의 등 지배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²⁸⁾

3)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1960년대 북한은 주 6일, 1일 8시간(직종에 따라서는 7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휴가기간은 만근(滿勤)을 한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1년에 14일간(일요일 포함)을, 소년 노동자에게는 30일간을, 그리고 임산부에게는 77일간의 추가적인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였다.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에게는 7일에서 21일까지의 보충휴가가 주어졌다.²⁹⁾ 또한 기업소는 노동자들에게 건강진단, 월동준비, 안전기술·노동위생 교육, 정·휴양소 또는 요양소 파송,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급 단기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기업소는 노동자들에게 주택과 휴식오락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식당을 운영하여 실비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생산현장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웠을

28)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29) “휴가허여절차에 관한 규정”(1949. 11. 4. 로동성 규칙 제1호), 『북한법령집』 제4권, 293~295쪽.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규율은 매우 엄격하여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인하여 30분 이상 노동시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결론으로 처리됨으로써 그만큼 휴가일이 감소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1960년대에 들어와 국가계획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규정된 노동보호 조항을 준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급 경제단위에 단위에 주어진 계획의 달성을 보장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고, 계획의 내용과 기간도 더욱 세분화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받은 연간계획을 성(省)과 관리국(管理局)에서 분기별로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1962년부터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이 분기별로 관리국과 생산지도국 내의 계획부에 하달되었고, 다시 관리국과 생산지도국 계획부에서는 월별 계획을 작성하여 공장 계획부에 하달하였으며, 공장 계획부는 이를 직장별에 10일 계획으로 세분화하여 하달하도록 하였다.³⁰⁾ 따라서 항상 초과달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소와 상급기관으로서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노동강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농업협동조합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1962년부터는 농업협동조합에도 ‘월 작업지령제’가 실시되어 국가에서 지시한 생산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1962년 2월 숙천군 경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월 작업지령제는 군협동조합 경영위원회가 각 협동조합에 매월 협동조합 측에 한 달 동안에 행해야 할 작업종류와 지출 노동력 등을 작성하여 지시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된 첫 달에는 해당 협동조합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량의 70%만을 지시하고 나머지 30%는 협동조합에 위임했지만, 3월부터는 군협동조합 경영위원회가 작업량의 80%를 규정하고, 협동조합이 15%, 작업반이 5%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정착되었다. 이후

30) 김일성,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 데 대하여”(1961년 12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7쪽.

이러한 ‘월 작업지령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협동조합 측에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군경영위원회가 대규모 농기계나 운반수단, 관개시설, 그 외 국가적 생산·기술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³¹⁾

또한 국가에서 부과한 생산목표는 ‘노동기준량’을 토대로 하여 이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시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노동기준량은 특정한 작업 혹은 생산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기준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량의 결정은 “선진적인 기술, 기술공학 및 선진적인 노동조직”을 기준으로 하거나,³²⁾ 최고의 효율적인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작업반 중에서 작업반 내에서 산술평균치를 능가하는 사람들만 추려내어 다시 산술평균을 구하거나, 우수한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관측하여 해당 작업의 소비시간과 작업실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기준량은 제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생산설비 공구 지구의 도입, 원자재의 질 및 규격이 변동되었거나, 창의 창안 및 선진 기술이 도입되었을 경우 또는 임시 기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³³⁾ 따라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노동기준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였고, 이는 다시 노동기준량을 더 높여 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요된 각종 교양사업과 선전사업은 “8시간 로동에 대한 규률을 지키고 그 외의 8시간 사회, 정치, 문화생활과

31)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の成立1945~61”, 565쪽.

32)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지식』(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165쪽.

33) 위의 책, 171쪽.

<표 1> 민주선전실 주간 운영 계획서

날짜	요일	작업전	참가자	점심시간	참가자	작업후	참가자
21	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 동지의 교시 침투	종업원 전체			공장 구락부에서 조직하는 직장별 씨클 경연에 출연	씨클원 전원
22	화			노래보급 <자력갱생 행진곡>	종업원 전체	미술 씨클원들과의 협의회 <숙보의 기동성 보장>	씨클원 전체
23	수			문답 경연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에 대하여> 매 작업반에서 5명씩	종업원 전체	이야기 모임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종업원 전체
24	목	시사 독보 <최근 남조선 정세>	종업원 전체	탁구 경기 선수 2명씩 등장	종업원 전체		
25	금			회상기 연구 발표 모임 <항일 빨치산의 영웅 김진 동무>에 대하여	종업원 전체	문화 씨클원들의 작품 합평회 <11. 7일 교시 관철을 위하여>	종업원 전체
26	토	시사 독보 <최근 남부 월남 정세>	종업원 전체	그림 연극 관람 <미제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	종업원 전체	과학 강연회 영화 상영	종업원 전체
27	일			가족들과 좌담회 <가정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릴 데 대하여>	종업원 가족 전체	전문 예술단 공연 관람	종업원 가족 전체

출처 : 『로동자』, 3월호(1965), 46쪽.

8시간 휴식 조건을 정확히 리용하도록³⁴⁾ 하는 조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자들이 여유 시간이라고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표 1>과 <표 2>는 각기 공업과 농업 생산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교양과 선전활동 계획서의 사례이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작업

34) 김일룡, “새환경에 상응하게 직맹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로동자』, 12월호 (1964), 11쪽.

<표 2> 문덕군 마산 농업협동조합 제3작업반 포전 선전실의 5일간 선전실 운영 계획서

구분 날짜	오전 휴식 시간	시간 (분)	점심 시간	시간 (분)	오후 휴식 시간	시간 (분)
4월 10일	해설 담화 <황해남도 현지지도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사>	25	1. 노래 보급 <혁명가요> 2. 신문 독보	15 10	기술 전습회 <랭상모 파종기술 지표에 대하여>	20
11일	회상기 감상 모임 <원수는 간악하다>	20	1. 재담 <10만톤군> 2. 신문 독보	15 10	1. 노래 보급 <혁명가요> 2. 농악놀이	15 10
12일	회상기 감상 모임 <원수는 간악하다>	20	1. 기술 전습회 <니꼬병 방지에 대하여> 2. 팔써름 경계(조별)	20 10	1. 남조선 정세 (신문 독보) 2. 군중무용 보급	15 10
13일	신문 독보 회상 실기	20	기동 예술대 공연 <조별 경쟁에서 승리한 조를 위한 축하 공연>	25	1. 노래 보급 <혁명가요> 2. 오락회	15 10
14일	해설 담화 <우리 뫼의 실정에 대하여>	20	신문 독보 농촌에 관한 소식	15	1. 5일간 총화 2. 오락회 농악놀이	20 10

출처 : 선동원사, 『선동원들에게 주는 참고자료』(東京 : 學友書房, 1963), 38쪽.

시작 전후, 점심시간, 그리고 휴식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시간 이후에도 각종 학습과 선전에 참여하여야만 하였다. 특히, 독보(讀報)나 발표는 노동자, 농민들이 사전에 학습을 하고 참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귀가 후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다.

“50년대가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계급투쟁은 심화되었다. ‘회의’라는 소리에 사람들은 미쳐 죽을 지경이었다. 하루에도 몇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때도 없이 계획도 없이 ‘모입시다!’ 하고는 시간의 제한 없이 정치일꾼들이 ‘연설’을 한다. 때문에 그날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밤 1시고 2시고 새벽까지도 작업시

간을 연장해야 한다.”³⁵⁾

이처럼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이나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끊임없는 노동과 학습, 그리고 회의에 동원되면서도 자신의 과업을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4) 분배 및 임금 제도

1960년대 북한의 임금제도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표 3> 공업 부문 임금등급표

공업 부문	급수	임금계수 (최저급~최고급)
전기, 기계제작, 화학	8	1.00~2.17
금속, 전력	8	1.00~2.15
공예품, 문화 기재	8	1.00~2.14
인쇄	8	1.00~1.94
석탄, 광업, 자질 탐사	7	1.00~2.10
林山	7	1.00~2.09
제지, 펄프, 제약, 제지 가공	7	1.00~1.95
건재, 시멘트	7	1.00~1.94
수산, 어로, 건설	7	1.00~1.90
금속, 일용품, 피혁	7	1.00~1.77
방직, 고무, 식료	7	1.00~1.76
피복	7	1.00~1.71
수산물 가공	6	1.00~1.75

출처 :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지식』, 150쪽.

35)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 지식나라, 2000), 290쪽.

도급제(都給制)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는 개별 노동자의 기능등급 혹은 작업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계수를 부여하고, 이 계수에 노동시간 혹은 작업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표 3>과 같이 기능등급은 공업 분야의 경우는 직종에 따라 6등급에서 8등급까지 분류하고, 최저등급과 최고등급 사이에는 1.71배에서 2.17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하였으며, 기능등급이 높을수록 임금계수의 증가율도 누진적으로 높아지도록 하였다.³⁶⁾

그러나 이러한 도급제도 노동조건,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다음의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유해 혹은 중노동 작업 부문이나 국가적 긴급 작업 부문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도급단가에 초과수행 누진율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작업 부문에 대해서는 간접도급제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작업반을 하나의 단위로 한 도급제와 상급제를 설정하여 노동자 집단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한 상호 감시와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³⁷⁾

농업 분야의 경우에도 ‘노력일’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협동농장에서는 1~5급, 국가 농목장 작업등급은 2~7급, 농기계 작업소는 2~4급으로 작업등급을 나누어 작업등급에 따른 노력일은 1등급은 0.50일, 5등급은 1.50일로서 최저등급과 최고등급 사이에는 3배

36) 이러한 임금격차는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다. 1949년에 채택된 “로동자 임금적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1등급과 제8등급 간의 임금계수가 3.1배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었다. 대륙연구소 편, 『북한법령집』, 제4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310쪽.

37) 이러한 경쟁의 한 예로 ‘림병규 천리마작업반’에서는 “생산 및 절약 과제의 수행, 노동강도, 노동규율의 준수, 모범적인 활동 등의 항목에 대해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개인별 평가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일일이 점수화하였다”한다. 위의 책, 128쪽.

<표 4> 공업 부문 임금제도

구분	적용대상	계산법	
도급제	단일 도급제	도급단가 및 생산물을 양적으로 계산이 용이한 작업	해당 작업의 표준급수에 대한 일 임금 기준액 도급단가 = 일 작업 기준량
	누진 도급제	·유해 혹은 중노동 작업 부문 ·국가적 긴급 작업	누진도급임금 = (도급단가×생산실적량)+(도급단가× 초과수행누진율×초과생산량)
	간접 도급제	노동의 결과가 다른 도급노동자의 생산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직접 도급노동자들의 노동기준량 대비 실적에 따라 달성율의 60~100%를 증액 혹은 삭감
	반(班) 도급제	개별 노동자 단위로 노동의 결과를 계산할 수 없는 작업 부문 반 책임제로 작업할 경우 더 높은 능률을 산출할 수 있는 작업	작업반 단위의 작업 기준량과 도급 단가 책정, 소속 작업반원들은 자신의 기능등급과 노력공수에 따라 분배
	공수 도급제	피해복구사업, 화물 상·하차 작업 등 긴급 작업	일정한 작업총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한과 인원 등의 공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불
정액제	·기준화할 수 없는 작업 ·작업의 질이 특히 중요한 작업	기능 등급 × 노동시간	
상급제	계획초과 상급제	원가저하 및 생산계획 초과수행한 경우	기업소 월 임금기금의 10%까지 상급 적립
	질 제고 상급제	원가를 저하하고 계획과제를 완수한 조건에서 제품의 질을 현저히 제고한 경우	기업소 월 임금기금의 10%까지 상급 적립
	설비비용 을 제고 상급제	중요기계 설비의 이용률을 국가기술지표보다 제고한 경우	기업소 월 임금기금의 10%까지 상급 적립
	작업반 우대제	국가계획과제에 따른 월 생산계획의 일정한 수준을 초과 수행한 경우	생산계획의 일정한 수준까지는 도급 기본임금 적용, 그 이상은 우대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

출처 :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지식』, 153~163쪽에 따라 작성.

의 차이가 나도록 하였다.³⁸⁾ 그러나 1960년에 ‘작업반 우대제’와 ‘분조도급제’가 실시됨으로써 농업 분야에서도 분배제도는 다양해지게 된다.

작업반 우대제는 1960년 2월 김일성의 청산리 현지지도를 계기로 협

38)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지식』, 353쪽.

동농장에 적용된 것으로, 협동농장의 작업반별 생산계획을 부과하고 계획의 90%까지의 범위 내에서 설정된 우대기준을 초과 수행한 경우 각자가 취득한 노동일수에 따라서 기본 분배를 받는 것 이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작업반원들에게 추가로 분배하는 분배제도이다.³⁹⁾ 또한 1960년 6월부터는 내각결정 제35호에 따라 국영 농·목장에서 협동농장의 작업반 우대제와 비슷한 형태의 ‘작업반 독립채산제’와 ‘상금제’가 실시되었다.⁴⁰⁾ 이처럼 집단적 차원의 분배제도는 1960년대 중반에 ‘분조도급제’가 도입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1965년 5월 11일 김일성은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분조도급제를 제안하였고, 그해 11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해부터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분조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⁴¹⁾ 이 제도는 “토지·가축·농기구와 노동력을 고정시켜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수확고 계획과 노동계획을 부여받고, 이 계획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분조원에게 노동일을 재평가하고 이 노동일수에 상응하는 분배를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반보다도 규모가 작은 단위를 기초로 하여 노동을 조직화하고 분배를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기존의 작업반 단위에서 보다 세밀한 단위인 분조로 농민들을 조직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고 집단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39) 고승효, 『북한 사회주의 발전연구』, 233쪽.

40) 『조선중앙년감 1961』, 66쪽.

41) 『조선전사』, 제30권, 176쪽.

4. 국가경제와 인민의 생활 수준

1960년대 북한 경제는 ‘자립경제’ 노선과 ‘경제·국방 병진’ 노선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 11월에 열린 제5차 당대회에서는 3년 연장된 제1차 7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공업생산 3.3배(계획은 3.2배) 성장하였으며, 농업은 “식량문제가 완전히 풀렸고 농촌경리의 다른 모든 부분들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알곡 토대”가 닦아짐으로써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발표되었다.⁴²⁾ 김일성은 그 동안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어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결과 세계 선진국가 대열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었으며, 세계 모든 대소 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⁴³⁾ 1960년대 북한이 이룬 경제적 성과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곧바로 인민들의 생활향상으로 연결된 것은 아

42)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22~23쪽.

43) 북한의 발표는 다음과 몇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과거와 달리 제1차 7개년 계획기간에 달성된 품목별 생산량을 극히 제한적으로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나마 발표된 품목별 생산량에 있어서도 대부분 계획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발전량은 165억 kwh(계획은 170억 kwh), 강철은 220만 톤(계획은 230만 톤), 기계제작은 3.2배(계획은 3.3배), 화학비료는 150만 톤(계획은 170만 톤)에 그치고 있었다. 셋째는, 계획기간의 마지막 해인 1970년의 공업 총생산액의 성장률이 무려 31.4%에 달했다는 점이다.

<표 5> 북한의 GNP와 1인당 GNP(1961~1970년)

연도	GNP (백만 원)	GNP (백만 달러)	GNP (백만 달러)	1인당GNP (달러)	1인당GNP (달러)	성장률 (%)
1961	4763.4	3969.5	2165.2	357	195	13.1
1962	5290.9	4409.1	2404.9	386	211	11.0
1963	5790.3	4825.3	2632.0	411	225	9.4
1964	6369.3	5307.8	2895.1	440	240	9.9
1965	6603.2	5502.6	3001.5	454	248	3.6
1966	6986.0	5821.7	3175.5	468	255	5.8
1967	7391.2	6159.3	2876.0	482	225	5.8
1968	7819.9	6516.6	3042.8	496	232	5.8
1969	8273.4	6894.6	3219.2	510	239	5.8
1970	10838.2	9031.8	4217.2	650	304	31.0

출처 : 황익각, 『북한 경제론』(서울 : 나남, 1992), 142~143쪽.

니었다. 북한은 제1차 7개년 계획 기간중 공업생산은 3.3배로 성장함으로써 계획했던 3.2배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생산수단 부문이 3.7배로 성장한 결과였으며, 소비재 생산은 계획했던 3.1배에 미달하는 2.8배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인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업 부문의 성장이 크게 저하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⁴⁴⁾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여 작성된 <표 6>에서도 1960년대 북한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60년에 비

44)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알곡생산량은 1967년 511만 톤, 1968년 567만 2천 톤으로 발표되었으며, 1973년의 알곡 생산량이 534만 3천 톤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아 1969년과 1970년의 알곡 생산량은 이에 못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에 북한이 알곡을 500만 톤 생산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1960년의 380만 톤보다 31.6%가 증가한 것이지만 같은 기간에 인구가 36.1% 증가함으로써 1인당 알곡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조선중앙년감』;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Washington, D.C. :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p.55.

<표 6> 노동자·사무원의 수입 및 소매물가지수(1960~1965년)

(1960년 100 기준)

연도	항목	노동자·사무원 1인당 화폐임금	노동자·사무원 세대당 수입의	소매물가지수
		성장	성장	
1960		100	100	100
1961		103.4	~	~
1962		104.4	~	~
1963		106.5	113	118.2
1964		108.6	114	120.5
1965		n.a	~	122.7

출처 : 연도별 『조선중앙년감』에 의하여 작성.

해 1964년의 노동자·사무원의 1인당 화폐 임금은 8.6%, 세대당 화폐 수입은 14% 증가하였지만 소매물가 지수가 20.5%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사무원의 1인당 실질 소득은 10%, 세대당 실질 소득은 5% 가량 하락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인민들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는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당이 이번에 모든 어린이들에게 겨울옷을 해 입힐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당의 두터운 배려입니다. 내 생각에는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이처럼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배려하는 나라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64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겨울옷을 해 입히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무려 1억 4,000만 원의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나라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의 한 달 로임과 맞먹습니다. … 털어놓고 말하여 당에서 이와 같이 두텁고도 세심한 배려를 돌리지 않는다면 모든 어린이들에게 겨울옷을 해 입힐 수 없습니다.”⁴⁵⁾

45) 김일성, “교통운수문제와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 것은 현 시기 우리나라 인민경제의

김일성은 당이 취한 조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이 나서지 않으면 어린이들에게 겨울옷마저도 해 입힐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인민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는지 웅변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인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제5차 당대회를 한 달 앞둔 1970년 8월 31일 내각결정 제70호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의 임금을 평균 31.5% 올려 월 평균 임금이 70원에 이르게 하였지만,⁴⁶⁾ 문제는 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생산물의 존재 여부였다.

5. 맺음말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외부 원조의 삭감과 과도한 국방비 부담, 그리고 낮은 기술수준이라는 악조건 속에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전쟁의 상처 속에서 힘겨운 전후 복구 사업을 벌여 온 북한의 인민들은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비록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어느 사회주의 국가 못지 않은 경제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일상적인 삶은

절박한 요구”(1968년 11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02~403쪽.

46)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 올릴 것에 대하여”(1970년 8월 31일 내각결정 제70호), 대륙연구소 편, 『북한법령집』, 제4권, 336~337쪽.

더욱 열악해져 갔다. 공업 부문의 성장은 경공업보다는 중공업과 군수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농업 부문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었다.

나아가, 1960년대 북한의 노동력 관리정책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밑받침이 되었다. 노동력에 대한 동원과 통제가 극대화됨으로써 북한의 인민들은 당과 각종 조직 속에 철저히 편입되었으며, 집단주의적인 인간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비롯한 각종 노력경쟁에 연일 내몰려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인민들은 자신들을 지켜 줄 어떠한 조직도, 힘도 갖지 못한 채 거대한 당과 국가의 부속품으로 전락해 갔다. 1960년대 북한은 바로 이러한 인민을 바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주조해 내고 있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4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_____,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4권(서울: 국토통일원, 1988).

김승준,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와 농업문제』(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김원석·박원일, 『인민경제 계획화에서 균중로선의 관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1978).

_____,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로동자신문사,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발전을 위하여』(평양: 로동자신문사, 1970).

선동원사, 『선동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東京: 學友書房, 1963).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조선로동당출판사, 『경제지식』(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 『정치경제학 직관자료』(東京: 學友書房, 1964).

_____, 『조선전사』, 제3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76쪽.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작업반』, 제4권(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3).

_____, 『천리마기수독본』(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3).

김영걸,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의 강화”, 『근로자』, 제20호

(1965).

김왈룡, “새 환경에 상응하게 직맹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로동자』, 3월호(1965).

전정희,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제9호(1964).

주학필, “농민혁명화와 집단주의 교양”, 『근로자』, 제7호(1969).

직업동맹출판사, “민주선전실 주간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로동자』, 12월호(1964).

편성,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문제 : 평양전기공장의 경험을 놓고”, 『근로자』, 제24호(1965).

편집국, “천리마운동과 자력갱생”, 『근로자』, 제17호(1963).

_____, “협동농장들에서 분조도급제”, 『근로자』, 제24호(1965).

『조선중앙년감』 1963년, 1964년, 1966년 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2차 자료>

고외정, 『북한 경제입문』(서울 : 청년사, 1988).

고승효, 『북한 사회주의 발전연구』(서울 : 청사, 1988).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주요 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서울 : 국토통일원, 1979).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서울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대륙연구소 엮음, 『북한 법령집』, 제1~5권(서울 : 대륙연구소, 1990).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 지식나라, 2000).

스칼라피노 · 이정식,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서울 : 돌베개, 1987).

안드레이 란코프, 김광린 옮김,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

(서울 : 오름, 1995).

통일원, 『북한 경제통계집』(서울 : 통일원, 1996).

황의각, 『북한 경제론』(서울 : 나남, 1992).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の成立1945～61”(東京 : 東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Eberstadt, Nicholas and Banister, Judith,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Washington, D.C. :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Abstract>

The Labour Policy and People of North Korea in the 1960s

Lee, Seong Bong(Korea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labor policy and its impact on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 laborers and peasants during the 1960s. In this perio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alism were formed and consolidated, characteristics like the unique ideological system called *Juche*, deification of the supreme leader, highly organized and extended party system, and highly stratified social classification and mobilization system. In this regard, studies on contemporary North Korea should be preceded by analyses of 1960s' North Korean society.

Even though some works on 1960s' North Korea have taken this perspective, most of them have focused only on the volition of Kim Il-sung and/or the top-ranked cadres and their policies without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people who had practically supported the system. In this vein, there is a great need to consider the ordinary lives of people and their changing relationship with authority and the party-state system in order to more fully understand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labor policy and environment of North Korea in the 1960s. First of all, by concentrating on the basic features of the socialist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this paper looks into the way the lives of the working class related to the overwhelming 'organization, such as the party-state system. Second, the changes in the lives and consciousness of laborers and peasants are given more serious attention via an examination of discipline, circumstances, regimentation of forces, ideological education, and wage system as they relate to labor. Third, the lives of workers, their appreciation of and attitude toward the socialist system of the 1960s are analyz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standards of living.

One of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was that production sites in 1960s' North Korea were not only places for material production, but also places for remodeling and socialization of the people into "new socialist individuals". This means that as the mobilization and control for the labor force maximized, North Korean people were already fully absorbed into the party-state system and organization through ideological education and *Chollima* movement. As a result, people were degraded and made into mere accessories of the mighty party-state system without any supportive organization or power. Thus, in the 1960s, "North Korean Socialism" was formed.

Keywords: North Korea, economy, labor, labor policy, labor discipline